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73 발의연월일: 2024. 12. 30.

발 의 자:김현정·박홍배·이기헌

부승찬 • 전재수 • 손명수

이개호 · 정태호 · 김기표

강준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채무자회생법")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,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,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로 '파산선고를 받고 복 권되지 아니한 자'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과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,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음.

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

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호나목 삭제 등).

법률 제 호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호나목을 삭제한다.

제26조제3항 중 "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"를 "다단계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14조(결격사유)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			
는 법인은 제13조에 따른 등록			
을 할 수 없다.			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1		
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			
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		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		
나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	<u><삭 제></u>		
지 아니한 자			
다.·라. (생 략)	다.·라. (현행과 같음)	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		
제26조(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	제26조(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		
간 중 업무처리 등) ① · ②	간 중 업무처리 등) ① · ②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③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	③		
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·도			
지사에게 등록한 <u>다단계판매업</u>	<u>다단계판매업</u>		
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	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		
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	<u>를 한 경우</u>		
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			
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			
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			

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	
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	
말소할 수 있다.	